

# 꿈모아상호부금특약

일부개정 2013.12.10

일부개정 2014.12.30

제1조(특약의 적용) 꿈모아상호부금(이하 “이 부금”이라 한다)거래에는 이 특약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 예금약관을 적용한다.

제2조 삭제<2013.12.10>

제3조(계약기간) 이 부금의 계약기간은 6개월이상 5년이내로 한다. 다만, 미취학아동, 초·중·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계약하는 부금에 대하여는 6년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4조(불입 최고한도) 이 부금의 불입 최고한도는 횟수에 제한없이 매월 100만원이내로 한다. 다만, 이 예금 개설 후 1월 이내에 불입되는 부금에 대하여는 한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4.7.1>

제5조(이율) ①이 부금의 이율은 계약기간 3년에 대하여는 고정이율을 적용하고, 그 이후의 잔여 기간에 대한 이율은 3년 응답일에 금고에 게시한 자유적립적금의 동일기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변경 적용한다. 다만, 응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, 응답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월의 말일을 응답일로 한다

②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최초 계약시 약정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한다.

③만기일 이후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정상(변경)이율의 2분의 1로 한다.

제6조(세금우대의 적용) 이 예금은 세금우대저축, 비과세종합저축의 대상 예금이 될 수 있다.<개정 2014.12.30>

부칙 <2013.12.10>

이 특약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14.12.30>**

제1조(시행일) 이 특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특약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